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8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의원)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적용하면서 상대국 법률의 대한민국 국민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가입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등 세부 혜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를 두고 있지 않

음.

이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 근무 및 연금 가입 기간이 극히 짧음에도 체류 기간 중 미납된 장기의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보험료를 소급 납부(추납)하여 단기간에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까지 연금액 가산 혜택(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 등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의 연금 가입 및 추납 자격 판단 시 실제 국내 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행정 실무상 거주 기간에 대한 정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하여 출입국 및 체류 관리가 허술하게 적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시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 연금액 지급에 있어서도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검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과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상호주의

가 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각각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소득의 불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취약계층이 자신의 가입이력을 사후적으로 보충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가 외국인 가입자등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모든 외국인 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가 제한될 경우에는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에 상응하는 가입이력 보충 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으므로, 외국의 공적연금제도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성에 미칠 영향과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현행법 제126조제3항에서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4조 본문에서는 가입기간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유족연금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항 간 체계 정합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한 외국인 가입자 등의 적용관계를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 상호주의와 그 밖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와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상호주의와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각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